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59

발의연월일 : 2024. 9. 26.

발 의 자: 강준현·황정아·박수현

이재관 • 박홍배 • 복기왕

민병덕 • 이정문 • 임광현

문정복 • 이용우 • 박희승

이병진 • 이개호 • 이강일

한창민 · 정동영 · 박정현

양문석 • 서삼석 • 박홍근

진성준 • 이학영 • 허성무

송옥주 · 신정훈 · 이재강

이워택 · 송재봉 · 황명선

정혜경 · 서영석 · 추미애

김용만 • 전재수 • 민형배

강훈식 • 윤준병 • 김윤덕

김원이 · 김준혁 · 신장식

조승래 • 조배숙 • 정준호

곽상언 · 이인영 · 이기헌

김남근 • 유동수 • 김현정

안호영ㆍ허 영ㆍ전용기

(5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화두로 전개되면서 30여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0 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만에 제정되었음.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혁명 참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에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세우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률 제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제의 국권침탈"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제4조(적용 대상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	
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1 「동학농민혁명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특별법」에 따른 2차 동학농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	민혁명
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	
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	
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	
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2 「동학농민혁명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특별법」에 따른 2차 동학농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	민혁명
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	
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 건국포장 또는 대	

통령 표창을 받은 자	